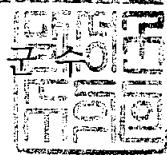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449 |

제출일자 : 2008. 10. 2.

제출자 : 달성군수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환율상승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자가용 운행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민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승용차  
요일제 운행 조기정착 및 활성화

## 3. 주요내용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100분의5를 경감  
(안 제 16조의2)
-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함.
-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당해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당해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당해 연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함.

4. 개정조례안 : 따로 불임

5.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 9. 5 ~ 9.25 (특이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특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당해 연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당해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의 2(신설) | <p><b>제16조의 2(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b></p> <p>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특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당해 연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당해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li> </ol> |